

2011. 4. 20. (수) 10:00

제1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제4차 본 회의

조례안 심사 보고서

총무위원회

【목 차】

1.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----- 1

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4. 4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4. 4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4. 15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20호

2. 제정이유
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과 그 설치 비용의 지원,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·홍보의 실시 및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,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및 시행에 관한 군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.

나.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시책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.

-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 비용 지원
-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·홍보의 실시
-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

다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고 있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군수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시설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(안 제5조).

○ 설치권장 시설

-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
-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로서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
-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
-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
-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

○ 응급장비 관리

-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것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고,
-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,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 하도록 함

라.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.

-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

마.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「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」 준용 규정을 둠(안 제7조)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
- 그 주요내용을 보면
 -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,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및 시행에 관한 군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
 - 안 제4조에서는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 - 안 제5조에서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군수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시설과 그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
 - 안 제6조에서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 - 이 밖에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,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·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.

-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 의료기관 응급실의 시설·인력 등 부족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대처가 미흡함에 따라 응급 의료를 지원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하고 군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
- 현재 경남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시·군이 없고 전국에서는 9개 시·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, 자동심장충격기 권장대상시설은 17개소로 7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응급의료기관의 인건비 등 운영비는 별도 지원이 필요함.
-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